



서울특별시 중구

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(경정)-농협금융지주(주)

지방소득세(법인세분)을 다음과 같이 부과취소하고자 합니다.

- 근거조항 : 지방세기본법 제58조【부과취소 및 변경】
- 납 세 자 : 농협금융지주 주식회사
- 부과취소 내역

(단위:원)

부과취소(경정) 내역서								
연 번	년도/기분 과세번호	납세자 (주민번호)	세목	세액(원)			부과취소 사 유	
				당초	취소 (경정)	차액 (정당세액)		
1	2015/05신고 (520-650589)	농협금융지주(주) *****	지방소득세 (법인세분)	7,176,403,720	1차	-94,718,490	7,081,685,230	국세경정
					2차	-14,594,920	7,067,090,310	
합 계				7,176,403,720		-109,313,410	7,067,090,310	

※ 환급계좌 : 농협은행 301-0106-2484-71
(환급가산금:납부일 익일, 비번:5232)

- 붙 임 : 1. 부과취소(경정)결정서 1부.
 2. 부과취소내역서 1부.
 3. 연결법인별 안분 납부내역 1부.
 4. 국세청통보자료 1부.
 5. 환급신청서 및 안분내역서등 각1부.
 6. 환급통장사본 1부. 끝.

